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83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모경종・박지원・이상식

이광희 • 노종면 • 이용우

박정현 • 양문석 • 민형배

이재강 • 이병진 • 윤종군

김태선 · 문진석 · 김문수

강유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도 록 규정함.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끝까지 예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탄핵심판 중에 자진하여 사임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	
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의2. 탄핵심판 중에 자진하여
	사임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